

#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

WEEKLY NEWSLETTER



##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

### 호주, 수입산 알코올음료 대상 임신 경고 라벨의 의무 부착 (2023년 8월 1일부터)



TBT

이슈 바로가기 ▶

- 호주 농림수산부는 2023년 7월 31일 포장되거나 개별 용기에 담긴 알코올음료의 임신 경고 라벨 적용 시범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고시함
- 이에 따라 **2023년 8월 1일부터**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호주로 수입되는 알코올음료는 임신 경고 표시를 문구로 기재하거나 라벨을 부착해야 판매될 수 있음
- 주요 내용
  - 1) 적용 대상
    - 소매 판매용 알코올음료 제품(1.15% ABV 이상)
    - 추가 가공, 포장 또는 라벨링 없이 소매 판매에 적합한 포장된 개별 알코올음료 제품(1.15% ABV 이상)
  - 2) 라벨링 기준
    - ① 라벨 문구 변경:
      - “어떠한 양의 알코올도 귀하의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.  
(Any amount of alcohol can harm your baby)”
      - > “알코올은 당신의 태아에게 평생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.  
(Alcohol can cause lifelong harm to your baby)”
    - ② 음식 공급업체에 납품되는 식품 라벨에 대해서는 임신부 경고 라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삭제함
    - ③ 임신부 경고 표시 그림은 ‘와인 잔을 들고 있는 임신부 여성의 실루엣’을 포함함
    - ④ 기존에는 매 포장 겹(층) 마다 라벨 표시가 요구되었으나, 겹 포장지에만 표시 하도록 수정됨
    - ⑤ 골판지 소재의 외부 포장에 표시되는 임신 경고 라벨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검은색 단일 색상으로도 표기 가능(2024년 2월 1일까지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야 함)

(\*) 임신 경고 라벨 예시 이미지



(\*) 발효일: 2023년 8월 1일

출처: Department of Agriculture, Fisheries and Forestry, IFN 08-23: Guidance on pregnancy warning labels on imported alcoholic drinks, 2023.07.18

### 일본,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과 「식품,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」 개정안 발표

-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3년 7월 26일,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(후생노동성령 제 99호)과 「식품,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」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(후생노동성 고시 제 240호)를 공포함에 따라,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및 「식품,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」이 각각 개정됨
- 주요 내용(개정 대상 성분 및 내용, 한국에서 수출가능한 품목과 관련된 것에 한정)



SPS

이슈 바로가기 ▶

구분	성분명	식품 품목	잔류기준치(ppm) (개정 후)	잔류기준치(ppm) (개정 전)
농약	아이스프로티올레인 (Isoprothiolane)	쌀(현미)	7	10
		복숭아	-	0.02
		기타향신료	7	10
		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의 신장	0.9	0.01
		소의 식용 부위	1	0.02
		돼지의 식용 부분	1	0.01
동물용의약품	디미나진 (Diminazene)	소의 식용 부위	12	6
		우유	0.2	0.15
농약	피리다클로메틸 (Pyridachlometyl)	대두	0.2	-
		토마토	2	-
		피망	3	-
		가지	2	-
		오이	2	-

(\*) 시행 일정: 규격기준은 고시일인 2023년 7월 26일부터 적용되어야 하며, 잔류 기준치는 고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함

출처: 厚生労働省大臣官房, 食品衛生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及び, 2023.07.26

#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

WEEKLY NEWSLETTER



##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

### 대만, 「잔류농약 허용기준」 및 「축산물 내 잔류농약 허용기준」 개정안 고시



SPS

이슈 바로가기 ▶

- 2023년 7월 24일, 대만 위생복지부는 「잔류농약 허용기준(農藥殘留容許量標準)」과 「축산물 내 잔류농약 허용기준(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)」 개정안을 고시함
- 주요 내용
  - 1) 주요 변경사항
    - ① 「잔류농약 허용기준」 개정사항
      - '아바멕틴(Abamectin)' 등 26종 농약의 81개 항목 잔류 허용량 추가 수정 (제3조 부록1)
      - '피리오페논(Pyriofenone)'의 공통 명칭을 '派芬農'으로 수정 (제3조 부록1)
      - 'Bacillus amyloliquefacines D747' 잔류 허용량 면제 대상 추가 (제4조 부록2)
    - ② 「축산물 내 잔류농약 허용기준」 개정사항
      - '아세트아미프리트(Acetamiprid)' 등 농약 11종에 대한 꿀, 가금류 및 가축 제품의 잔류 허용량을 추가 및 수정함
  - 2) 위반시 조치사항
    - 제조, 가공, 조합, 포장, 운송, 저장, 판매, 수입, 수출을 비롯하여 증정 또는 공개 전시가 불가함
    - 6만 대만달러에서 2억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됨

출처: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(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), 預告修正「農藥殘留容許量標準」第三條附表一、第四條附表三及「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」第三條草案, 2023.07.24

### 중국, 유통되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조치 고시 (2023년 개정판)



TBT

이슈 바로가기 ▶

- 2023년 7월 24일,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「식품안전법」, 「농산품 품질 안전법」, 「식품안전법 실행조례」, 기타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「유통되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조치」의 2023년 개정판을 고시함
- 주요 내용
  - 1) 적용 대상 품목: 식용 농산물 및 농업 활동을 통해 수확한 식용 식물, 동물, 미생물 및 그 제품
  - 2) 주요 개정 조항
    - 제8조: 판매자는 식용 농산물 구매점검제도를 수립하고 식용 농산물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고 보관하며, 공급자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함
    - 제12조: 판매자는 판매 장소 또는 제품 포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식용 농산물의 이름, 원산지,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 등의 정보(추가)를 정확히 표기해야 함
    - 제13조: 수입된 식용 농산물의 포장 또는 라벨은 중국 법률, 행정 규정 및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함
  - 2) 시행일: 2023년 12월 1일
  - 3) 위반시 조치사항
    - 제8조를 위반할 경우, 「식품안전법」 제126조 제1항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음
    - 제12조, 제13조를 위반할 경우, 현(縣)급 이상 시장관리감독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며,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2,000~10,000위안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

출처: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(市場監督管理總局), 食用农产品市場銷售質量安全監督管理辦法2023年修訂版(國家市場監督管理總局令81號), 2023.07.24

### 싱가포르, 2023년 7월 19일부터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재개



수입통관

이슈 바로가기 ▶

- 싱가포르 식품청(SFA)은 일시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했던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(달걀 포함)의 수입을 2023년 7월 19일부로 재개한다는 무역안내문을 게시함
- 주요 내용
  - 1) 이전 수입 금지 조치의 배경
    - 싱가포르는 2022년 11월 7일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이 발생한 한국 일부 지역(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, 충청북도 진천군 월면)에서 생산된, 열처리되지 않은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(달걀 포함)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
    - 이번 무역안내문을 통해 해당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됨
  - 2) 대상 품목: 가금류, 가금류 제품(닭고기, 오리고기, 식용 달걀 등)
  - 3) 발효일: 2023년 7월 19일

출처: Singapore Food Agency, RESUMPTION OF IMPORT OF POULTRY PRODUCTS (INCLUDING TABLE EGGS) FROM THE REPUBLIC OF KOREA DUE TO LIFTING OF HPAI RESTRICTIONS, 2023.07.19